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
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
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
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·파
생재간접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주식·파생재간접형
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02.17 - 2011.02.16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
유진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SK증권,
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 05. 10	제2조 (집합 투자 업자 및 신 탁업 자)	이 투자신탁은 삼성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 지점을 신탁업자로 한 다.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 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 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 다.
	제41 조(이 의분 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에 따라 발 생한 이익금을 분배 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 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 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 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 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 업일. 다만,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신탁회계기간종료일 로부터 제2영업일로 한다. 2. ~ 3. 생략
	제48 조(수 익자 에 대 한 공 고등)	① ~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 여야 한다. 다만, 수익 자가 전자우편을 통하 여 수령한다는 의사표 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에 의하여 교부 할 수 있다.	① ~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 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 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 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 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을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④ ~ ⑥ 생략

2010. 09. 10	제41 조(이 의분 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에 따라 발 생한 이익금을 분배 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 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. 다만, 신탁 회계기간종료일이 영 업일이 아닌 경우 신 탁회계기간종료일로 부터 제2영업일로 한다. 2. ~ 3. 생략 ② ~ ⑤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 배한다.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2. ~ 3. 생략 ② ~ ⑤ 생략
	제48 조(수 익자 에 대 한 공 고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 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와 집합투자업자·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 자우편을 이용하여 수 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 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. 수익자총회의 결 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 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 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 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7. 집합투자업자의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합병, 분할, 분할합 병 또는 영업의 양도·양 수 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 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 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와 집합투자업자·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사무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 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그 사 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. 수익자총회의 결의 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 명서의 변경 및 단 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 병, 분할합병 또는 영 업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 는 경우 그 내용 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 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	② ~ ③ 생략	
--	--------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 회계법인	1년	330만 원	서면계약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